

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6. 7. 5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제4차 재무건설위원회(2007. 7. 2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정경제국장 김 광 우)

가. 개정이유

- 2006년 12월 30일 「지방세법」 제165조의 면허세 납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의 납기를 「지방세법」에 맞게 개정 ·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법 제1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허세를 미리 내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단서규정을 신설함 (안 제16조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